

개정사항 관련 안내

[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2021.04.01 시행]

I

「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」 소방청 추진 (20. 09)

1. 점검표 등 보고서 서식 간소화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

- ▶ 점검항목 코드화로 대상물의 용도, 설비유형, 점검상태를 데이터 형태로 관리
- ▶ 자체점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통계자료로서의 활용성 증대

구분	현행	개선
보고서식	결과보고서+ 점검표	결과보고서
점검서식	종합/작동 분리	통합일원화(코드화)
인증방법	불편(공인인증, 디지털패스)	간편(휴대폰, 공동인증)
보고방법	서면+소민터(작동)	서면+소민터(종합, 작동)

※ 4월1일 소민터시스템 오픈 이후 검수 후 사용자 안내설명서 업데이트 예정

2. '20.08.14(보고서 제출기한 단축) → 보고서 개정 필요성 대두

- ▶ 종합/작동 서식 구분 → 일원화 및 점검항목 통일
- ▶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(점검결과보고서) 7일 이내 제출
(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 서식3(점검표)는 3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)

II

점검인력 배치기준 대상물 등록

1. '19. 05.(감사원 감사) → 자체점검 기술인력 배치 관리감독 지적 → 개선책 마련요구

- ▶ 대상물 입력시 연면적 축소: 용도계수 축소, 설비유무 축소로 입력사항 지적 발생
(감사원 조사 총 128,181건 중 49,025(38.2%)의 용도계수 축소, 연면적 불일치 지적)

2. '20~'21년(직접입력방식에서 선택방식으로 개선) → 감사원 개선촉구 사항

- ▶ 소방청, 각 관할 소방서 및 시도본부의 건축물 정보를 배치신고 시스템에 제공
- ▶ 시행 이후 제공받은 대상물 정보가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나, 각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여 대상물 정보내용 수정 후 배치신고 필요

※ 소방대상물 정보 안정화 기간 이후 배치신고 업무 효율성 증대 기대